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1460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현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7.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대하여 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9. 20. 접수 제13827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A은 2017. 1. 14. 21:00경 지인들과 E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F 소재 건물의 'G'라는 상호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다음 날 02:30경 위 주점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머리 우측 반구의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7. 8. 3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 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 받고 2018. 12. 13. 확정 되었습니다.

다) 원고들은 2018. 3.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696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취지 확장신청으로 같은 법원 2019가합209370호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 후 위 사건은 2020. 11. 27.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E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판결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758,014,87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그 부상이 상당히 심하여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또한 E은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2017. 8. 31.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 한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5. 11. 1. 매수하였는데 원고 A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인 2017. 9. 20. 남편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 중 8/10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다) E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당시는 E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 제1항 나.와 같이 손해배상(기)을 지급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2017. 8. 31.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소유권 중 8/10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E의 배우자로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5년 이상 번 돈으로 구입한 주택으로 원래 피고의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의 명의로 10분의 8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21. 6. 23. E과 협의이혼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 8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설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다. 원고의 재항변

피고와 E의 협의이혼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이혼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 과세정보회신,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E의 무자력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의 증여 및 이전등기에 관한 피고의 사해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E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을 증여한 것은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E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17. 9. 20.로부터 거의 4년이 경과한 2021. 6. 23. 이루어진 사정과 피고와 E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 살아 온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증여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부동산 목록

1. 대구 북구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165.06㎡

2층 131.40㎡

지하 22.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대 31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세멘벽돌조주택 1층 82.53㎡

2층 65.70㎡

지하 22.2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분의 1 끝.

